

Deloitte Insights



EU CBAM 시행에 따른 대응전략과 향후 과제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리더메시지



김병삼 파트너

CBAM 자문 전담팀 | CBAM 서비스 리더

CBAM 대응을 위해서 전환기간 동안 해당 기업은 자사 제품의 CBAM 대상 여부 파악(EU 신고 CN코드 기준), 대상 제품의 특정 내재 배출량(Specific Embed Emission) 산정을 위한 데이터 취합, 특정 내재배출량 산정 Communication Template 작성 등의 프로세스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출 제품의 CBAM 대상 여부 확인, EU 세관 신고서 작성시 CN코드 판정 과정 그리고 제품의 내재배출량 산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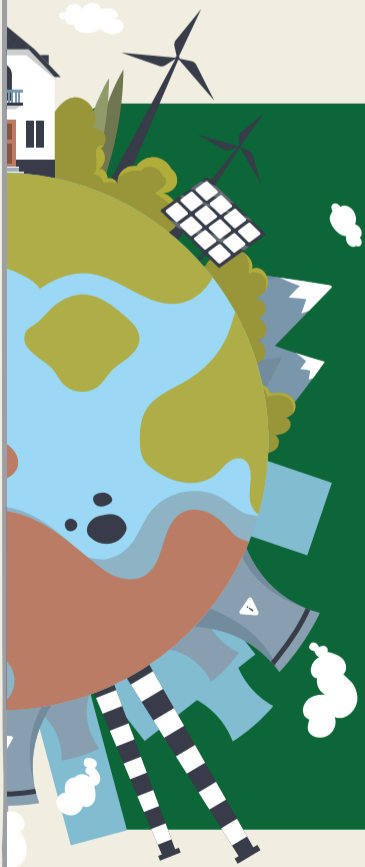
딜로이트 안진 CBAM 자문 전담팀 출범을 시작으로 유럽 발 기후변화 관련 규제에 대한 글로벌 전문 지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 CBAM 전문인력과 딜로이트 글로벌 네트워크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국내·외 자문시장을 선도하는 'CBAM 자문 리딩 펌'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입니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55%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법안 패키지인
Fit for 55의 일환으로 제안됨



- EU가 역내 환경규제를 강화할수록
생산공장이 규제가 낮은 지역으로 이전되거나,
저탄소 제품 생산을 위한 투자로 인한
생산 원가 상승이 불공정 무역을 야기한다는
문제 의식을 골자로 함

EU CBAM의 전환기간과 확정기간

EU 집행위원회에서는

CBAM의 본격 시행 이전
2년 3개월의 제도 적응 기간을 두고 있음



2024년 2월 현재 기준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량 보고 의무만을 부여



2026년 1월~ (확정기간 시작일)

CBAM 인증서 제출 의무가
추가적으로 부여



CBAM 인증서 가격 전망



CBAM 인증서의 단위 가격은

유럽 탄소배출권 시장가격에 연동되어 있으며,

2026년 CBAM 본격 시행 시기와 맞물려

2024년 2월 기준으로

60 유로 선에서 거래되고 있지만

CBAM의 본격시행과

EU ETS 시장가격과의 연동에 맞물려

2030년에는 100~150 유로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분석이 우세적

CBAM 대응 절차

기업들은 우선 EU에 수출하는 제품의 CBAM 해당여부를 CN코드 기준으로 점검하고 국내 제도 검토 등을 통해 특정내재배출량(SEE)을 산정 및 보고를 해야 함

대상 제품 확인

- ✓ 우리회사의 EU 수출 제품 확인
- ✓ CBAM 대상 제품 여부 확인(CN CODE)

국내 제도 검토

- ✓ 국내 배출권거래제 제출 명세서 확인(2022년 기준)
- ✓ 국내 배출권거래제 명세서 변동 사항 확인(2023년 기준)

공정별 산정 가능 판단

- ✓ 생산제품에 대한 공정 분석(연속공정 다수 제품 or 단일제품)
- ✓ 공정에 대한 프로세스 구분
- ✓ 공정별 배출량 산정 가능 여부 판단

데이터 취합

- ✓ 공정에 투입되는 외부 투입 원료 및 중간투입재에 대한 데이터 구축
- ✓ 제품별 해당기간 생산량, 전력사용량, 열 사용량 등을 집계

배출량 산정 및 검토

- ✓ 배출량 산정
- ✓ 제출 전 사전 검토/EU 당국과 협의 필요

보고

- ✓ EU시스템을 통해 보고서 제출

K-ETS & EU-ETS

배출권 거래제 시장 비교

양국 배출권 거래제의 무상할당 수준이나 방식, 유상 경매 절차와 가격 차이 등에 따라 향후 우리 기업의 CBAM 인증서 구매 부담이 상이해질 수 있기 때문에 K-ETS와 EU-ETS 간 차이에 대한 사전 인식이 필수적



K-ETS

Korea Emissions Trading Scheme

2020년 초 톤당 약 4만원까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지만,
국내 수요감소로 인해 하방압력이 작용한 이후
현재 약 1만원 선에서 거래 중



EU-ETS

European Union Emissions Trading Scheme

배출권 공급과잉으로 인한 낮은 가격대를 유지했지만,
2019년 도입된 유통물량 제한조치 및
탄소중립목표 발표, 배출권 이월가능 제도가
맞물리며 K-ETS 시장과는 다르게
2020년부터 급격한 상승 추세로
현재 톤당 약 80달러 선에서 거래 중

제품당 배출량 산정



제품당 배출량은

총 내재배출량을 제품 생산량으로 나누어 산정

총 내재배출량은

제품 생산공정의 배출량을 의미

복합제품은

전구물질 배출량까지 포함



직접 배출량과 간접 배출량은 구분하여 보고

EU CBAM 배출량 산정 시 주요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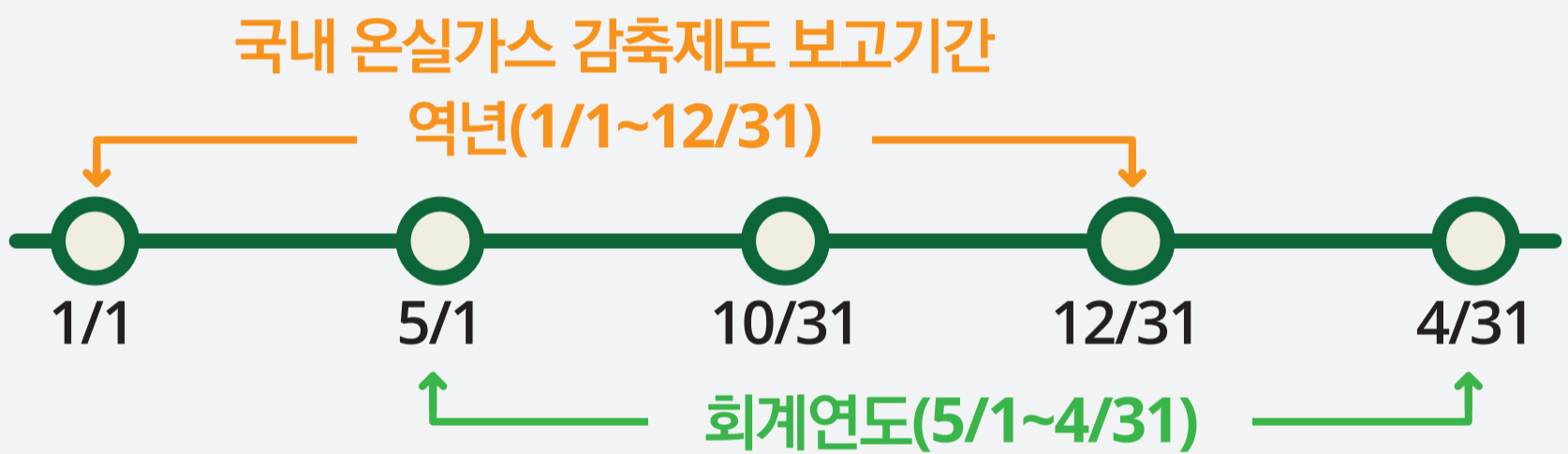


EU CBAM의 내재 배출량 산정 시

경계 범위 설정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잘못된 경계설정은 결국 실제 배출원 누락 혹은
불필요한 배출원 포함으로 이어질 수 있음

EU CBAM 보고기간

EU CBAM의 배출량 보고기간은
12개월 설정을 기본으로 역년(1/1~12/31)이지만,
기업의 상황에 따라 더욱 정확한 배출량 산정 데이터를
득할 수 있는 경우, **회계연도(5/1~4/31)**를
보고기간으로도 설정이 가능



- 2023. 10. 01 ○ EU CBAM 시행
- 2024. 01. 31 ○ 1차 CBAM 보고서 제출
- 2024. 04. 30 ○ 2차 CBAM 보고서 제출
- 2024. 07. 31 ○ 3차 CBAM 보고서 제출
1, 2차 CBAM 보고서 수정
- 2024. 08. 31 ○ 3차 CBAM 보고서 수정
- 2024. 10. 31 ○ 4차 CBAM 보고서 제출

*참고자료 : 한국환경공단(2023), CBAM 전환기간 이행을 위한 배출량 산정 해설서

내재배출량 검증보고서



EU 집행위원회에서는
CBAM 규정 부록 6에서 검증 보고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들을 명시하고 있는데
단, 추후 시행법률 확정 및 위임법 채택에 따라
세부 조항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EU 입법 동향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전문기관의 도움을 통해 **적시 대응이 필수적**

EU CBAM 대응 전문기관은 어떤 역량을 보고 선택해야 할까?



전문기관의 필요 역량

✓ K-ETS 및 EU-ETS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필요

→ 글로벌사 강점

✓ 내재배출량 산정을 위한 전문 역량 필요

→ 다년간의 경험 필요

✓ EU 현지 대응 역량 필요

→ EU 역내 지사 보유 및 현지 대응 역량 필요

✓ 환경 + 세관 당국 이슈 해결 필요

→ 현지 세관 당국과 필요시 협의 역량 필요

Deloitte CBAM 대응 전담팀

Deloitte CBAM 담당 리더



김병삼 파트너 탄소 Expert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CBAM 담당 리더

Tel: 02 6099 4277

Email: byungsakim@deloitte.com

Deloitte 관세담당 리더



유정곤 파트너 관세 Expert

딜로이트 관세법인
Customs & Global Trade 리더

Tel: 02 6676 2561

Email: jyou@deloitte.com

Deloitte EU CBAM 리더



Daan De Vlieger/Partner

Global Trade Advisory
Deloitte Belgium

Tel: + 32 2 600 68 08

Email: ddevlieger@deloitte.com

Deloitte 관세법인 CBAM 대응 주요 서비스

- ✓ 수입품목의 HS Code 및 EU CN Code 검토
- ✓ 수입 관세율 연계 분석 및 컨설팅
- ✓ Global Trade Advisory 협조 지원

Deloitte Global Trade Advisory Center

- ✓ Deloitte GTA Center Member로 관세, 무역, CBAM 현지 규제 자문 지원
- ✓ CBAM 적용 품목 유권해석 지원



앱스토어, 구글플레이/카카오톡에서 '딜로이트 인사이트'를 검색해보세요.
더욱 다양한 소식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Deloitte. Insights

성장전략본부 리더
손재호 **Partner**
jaehosoh@deloitte.com

딜로이트 인사이트 리더
정동섭 **Partner**
dongjeong@deloitte.com

연구원
신인식 **Manager**
insshin@deloitte.com

디자이너
박근령 **Senior Consultant**
keunrpark@deloitte.com

Contact us
krinsightsend@deloitte.com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본 보고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저작권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저작권자”)에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이 가능하고,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상업적 활용 기타 영리목적 이용시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이용시, 출처를 저작권자로 명시해야 하고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없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